

제2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2. 3. 23.)에서
의결된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
공포한다.

2022. 3. 24.

무안군의회 의장



김기현

무안군의회 규칙 제2022-5호

덧붙임 :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”로, “전라남도 무안군 의회”를 “무안군의회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의회의장”을 “의회 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각호의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후단 중 “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”를 “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별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에”를 “특별위원회에”로 한다.

-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회부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전라남도 무안군의회 회의 규칙」”을 “「무안군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구성·운영등”을 “구성·운영 등”으로, “「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」”를 “「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전라남도 무안군 의회</u>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1.13. 의회규칙 2021-10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----- ----- <u>무안군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청원서 보완요구) <u>의회의장</u> 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청원서 보완요구) <u>의회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다음 <u>각호의1</u>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이의신청) ① (생략)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</p>	<p>제5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/p>

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6조(징계)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전라남도 무안군의회 회의 규칙」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기준) 위원회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」와 「무안군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징계) -----

----- 「무안군의회 회의 규칙」-----
-----.

제17조(준용기준) ----- 구성·운영 등-----
----- 「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」-----
-----.